

2024년도 제1회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림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사업장 추진 사례

최 병 채 최우수상 수상자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Tel. 042-710-8032

CONTENTS

CONTENTS

01

추진 배경

02

추진 현황 및 성과

03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5~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	- 사업주, 행위자 - 법인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수급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고용종사근로자 -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전 사업장
중대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처벌	- 경영책임자 등(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 사업주 및 행위자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 법인 ·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매뉴얼” 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추진현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핵심 구축 사항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4.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배치 및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의견수렴 이행여부 점검
7.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8.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점검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수준 평가

“추진현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핵심 구축 사항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수행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인정됨.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게시 사진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재해발생 시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및 TBM 활동 일지

정기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 조치 이행 확인 보고서



“추진현황”

산림 사업장 안전 대피소 설치 운영

산림작업지내 산업 재해자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후송 관리 체계를 위해 안전 대피소를 설치.

작업자의 휴식 및 혹서기 그늘 등 쉼터 제공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및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등 현장 상시 게시

안전교육장 활용



“추진현황”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및 TBM 실시

산림사업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절차 마련

산림사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의체 운영

산림작업자의 의견 청취 후 반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과 기준 마련

제안제도 시행 공고문 현장 게시 및 시행



“추진현황”

숲가꾸기 공정 작업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6조에 의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해
소음과 목재분진에 대한 **영림단원 특수건강** 검진 실시

안전보건공단 **디딤돌 사업** 신청하여
특수건강 검진 비용지원 받아 검진 완료

확 인 서

성 명 : 문용수(순천향림국유림영림단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등록번호 : 680807-1*****

검 진 일 자 : 2024년 01월 22일

(특수)

직업명:소음·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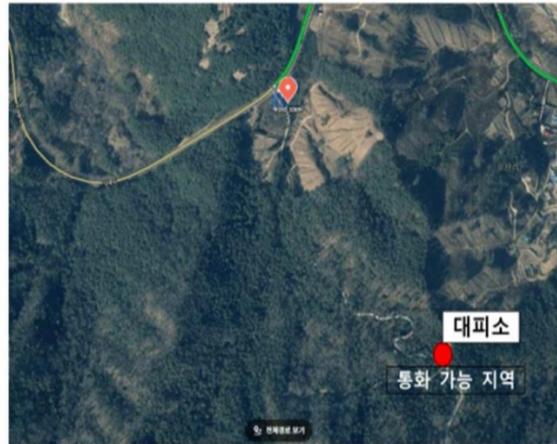
상기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추진현황”

산림 사업장별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 **현위치 :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63**

1. 작업 중지
 - 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견 즉시 작업 중지
2. 119신고 및 사고 상황 공유
 - 통화 가능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 구급차 출동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1069-1 지번 내비 검색 후 주도로에서 입도로 진입 후 15분가량 직진
 - 사건이 일어난 경위, 부상자 수, 다친 정도 설명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듣고 조치) 및 긴급후송
3. 긴급 대피(2차 피해 예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제거
 - 사고현장 출입통제 및 현장보존
4. 순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배현근, 061-640-9332)에 사고발생 보고

출연사	실연내용
재해개요	1. 일시 : 2024. 9. 9.(월) 11:30분경 2. 장소 :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 사업현장 3. 내용 : 덩굴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영림단원1이 덩굴에 걸려 넘어져 경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손목, 발목 골절로 의심되는 상태
(상황)	사고발생을 목격한 영림단원2는 무전기로 "사고발생! 영림단원1이 다쳤다"라 소리쳐 알리고 작업반장 "문인수"는 무전기로 즉시 작업을 중지케 한 후 재해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발견자 (영림단원2)	(콘소리로) "사고발생! 영림단원1이 다쳤다!" (작업을 멈추고 영림단원1에게로 긴급히 다가간다.)
작업반장 (문인수)	"사람이 다쳤다! (콘소리로) 경원! 작업 중지하라." "(영림단원2에게) 부상 상태가 어떡해요?" (재해자의 상태를 묻고 작업 중지를 확인한다)
발견자 (영림단원2)	"덩굴에 걸려 넘어지면서 경사지에서 굴러 떨어진것으로 보이고, 손목과 발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9 신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작업반장 (문인수)	"영림단원 3,4는 동물을 들고 영림단원1을 대피소로 옮겨주세요"
(상황)	영림단원3,4가 재해자를 옮기고 응급처치(다친부위를 부목으로 고정, 출혈시 지혈 처치 또는 내부 출혈의 징후를 관찰)를 한다. 그동안 작업반장은 재해발생 대응 시나리오를 보며 119에 신고한다.
작업반장 (문인수)	"산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긴급출동 부탁드립니다! 현위치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63으로, 우산리 1069-1까지 온 후 주도로에서 입도로 진입하여 15분 가량 직진하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황자를 옮겨주세요. (영림단원1을 살펴)부상자는 산에서 덩굴제거작업을 하다가 덩굴에 걸려 넘어져 경사지 아래로 굴렀고, 손목과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작업반장은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통화를 이어가며 응급처치 방법을 듣고 조치한다. 발견자 영림단원2는 영림단원에게 재해 상황을 알린다.
발견자 (영림단원2)	"당장님, 우산리 덩굴제거 현장에서 영림단원1이 덩굴에 걸려 넘어지면서 경사지에서 굴러 떨어져 손목과 발목이 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인수 반장이 119신고 중이며, 작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영림단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119 후송 후 후송된 병력을 알려주시고, 나머지 단원들은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표시 후 현장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윤주)	영림단장은 순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배현근)에게 재해 상황을 알리고 병원으로 출발한다.

“모든 산림사업”에 대해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작성

작업 중지

119 신고 및 사고 상황 공유

긴급대피

사고현장 출입통제 및 현장보존

“덩굴제거사업 재난대응 비상훈련 실시”

현장대리인에게 사고 알림



“추진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0(ZERO)** 달성”

“향후계획”

Step 1

“비상훈련”

모든 사업종에 대한 재해발생
대응 비상훈련 실시



Step 2

“의견수렴”

작업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운영



Step 3

“임업 기계화”

임업 기계화를 통한
전목 집재 작업 추진



THANKS

감사합니다.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는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